

중등교육연수원규정(3-5-17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교원연수에 관한 규정」에 의해 설치된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중등교육연수원(이하 “연수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및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수목적) 본 연수원은 현직 중등교원의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자질 향상과 새로운 전문지식 및 교육기술을 연마시키고 교육이론 및 방법, 일반교양 등의 교육을 통하여 교육전문가로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자기 역할의 수행과 우리나라 중등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연수과정) 교육의 이론·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 연수와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둔다

제4조(연수대상) 본 연수원은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한다.

제2장 조직 및 임무

제5조(직제) ① 본 연수원에는 원장을 두며, 연수원장은 교육대학원장이 겸임 하거나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본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장은 개설 교과목의 소속 교수 중에 주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.

③ 연수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연수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등교육연수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한다.

1. 수업 및 연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연수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
3. 평가 및 성적에 관한 사항
4. 연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- 5. 기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
- 6.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

제3장 연수 기간 및 시간

제7조(연수기간 및 연수시간) 연수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고, 그 이수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한다.

제8조(연수시기) 연수는 동계 및 하계방학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.

제4장 연수생 선발 및 입학

제9조(학급편제와 연수생 정원) 본 연수원의 과목별 정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10조(선발방법) 본 연수원 입학생의 선발은 학력 및 경력 등을 참작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정과 관련법규를 따른다.

제11조(입학시기) 본 연수원의 분야(교과)별 입학 시기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(서류제출 및 등록) 본 연수원에 입학이 허용된 자는 원장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,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.

제5장 수업료 및 재정

제13조(수업료) ① 본 연수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수업료는 각 개설 과정별 강사료 및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제14조(재정) 본 연수원의 재정은 연수생의 수업료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교비를 지원 받아 운영한다.

제6장 교과운영 및 수업

제15조(교육과정) 각 분야별 교과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작성,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다만, 일반교양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과목을 연수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.

제16조(수업방법) 수업은 실습 및 실기, 토의, 사례연구발표, 현장견학 등, 참여식 강의방법을 최대한 활용한다.

제7장 평가 및 수료

제17조(연수평가) ① 연수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평가의 내용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18조(성적) ① 본 연수원의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한 점수를 표시한다.

② 평가성적은 연수성적 분포 조건표를 적용한다.

제19조(수료) ① 본 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교원연수 이수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는 각 시·도 교육감에게 통보한다.

제20조(수료대상) 수료 대상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각 과목별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자
2. 총 이수시간의 90% 이상을 수강한자

제8장 상 별

제21조(표창) 원장은 연수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미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.

제22조(징계)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하게 한 연수생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퇴교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1. 연수과정 중 품행이 불량한 자
2.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한 자
3.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

②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는 소속장에게 징계 사실을 통보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